

	사규 (규정)	분류번호	C-G-008	Rev. 3	1/10
	정도경영 부문	제정일자	2023-06-01		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	개정일자	2026-05-13		

목 차

제 1 장. 총 칙

제 2 장. CP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

제 3 장. CP 운영

제 4 장.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

제 5 장. 기 타

개 정 이 력	차수	제(개)정일	시행일	주요 개정내용
	0	2023.06.01	2023.06.01	신규 제정
	1	2024.08.14	2024.08.14	조문 일부 개정
	2	2025.01.17	2025.01.17	조문 일부 개정
	3	2026.05.13	2026.05.13	양식 변경 및 조문 전면 개정

	사규 (규정)	분류번호	C-G-008	Rev. 3	2/10
	정도경영 부문	제정일자	2023-06-01		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	개정일자	2026-05-13		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 적)

본 지침은 주식회사 포스코 PH 솔루션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, 이하 "CP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,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개선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범위)

본 지침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되며,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① 본 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된다.
- ② 회사의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, 본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 수행 시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 내 타 규정에 따른다.

제 3 조 (임직원의 의무)

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임직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.

- ① 모든 임직원 업무 수행 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타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실 또는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인지한 경우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되며, 지체 없이 CP 주관부서에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④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CP 주관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.
- ⑤ 모든 임직원은 CP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공정거래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,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⑥ 모든 임직원은 CP 운영을 위한 점검, 조사, 자료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4 조 (용어의 정의)

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"공정거래 관련 법규"란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 등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, 고시, 지침 등을 말한다.
- ② "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(Compliance Program, CP)"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회사가 마련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서, 교육, 점검, 모니터링 및 개선활동 등을 포함한 일체의 관리체계를 말한다.
- ③ "자율준수관리자"란 CP의 수립 및 운영을 총괄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

	사규 (규정)	분류번호	C-G-008	Rev. 3	3/10
	정도경영 부문	제정일자	2023-06-01		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	개정일자	2026-05-13		

이사회에서 임명된 자를 말한다.

- ④ "자율준수협의회"란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자체 점검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.
- ⑤ "CP 주관부서"란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여 CP의 기획, 운영, 점검 및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의미하여, 정도경영사무국을 말한다.
- ⑥ "공정거래 리스크 평가"란 회사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·분석·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.
- ⑦ "현업부서"란 CP 주관부서를 제외한 회사의 모든 부서를 말한다.

제 2 장 CP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

제 5 조 (이사회의 역할)

이사회는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(CP)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,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여야 한다.

-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및 해임
- ② CP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승인
- ③ 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

제 6 조 (최고경영자의 지원)

- ① 최고경영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사의 규모 및 사업 특성에 적합한 CP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최고경영자는 CP 운영에 필요한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,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주관부서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고 이를 사내외에 지속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.
- ④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사실 및 역할을 임직원에게 명확히 공지하여야 한다.
- ⑤ 최고경영자는 CP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공정거래 관련 주요 리스크 및 개선사항에 대해 직접 의사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, 사내 임직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그 역할과 이해관계가 상충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되어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한다.
-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.
 1.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
 2.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
 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

	사규 (규정)	분류번호	C-G-008	Rev. 3	4/10
	정도경영 부문	제정일자	2023-06-01		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	개정일자	2026-05-13		

- ⑤ 자율준수관리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, 해당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⑥ 자율준수관리자가 사임, 해임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최고경영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⑦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원 발생 시에는 자율준수협의회 간사가 이사회 승인을 받을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 8 조 (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사상 또는 기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하여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.
- ④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인적, 물적 자원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.
- ⑤ 회사는 본 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,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,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.

제 9 조 (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- 1. CP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
 - 2. 공정거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
 - 3.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의 실시 및 관리
 - 4. 사전업무협의 제도의 운영 및 기준 마련
 - 5. 현업부서 자율점검 체계 구축 및 운영
 - 6. CP 감사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시행
 - 7.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여부 조사 및 개선 요구
 - 8. CP 운영성과 및 활동 결과에 대한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
 - 9. 공정거래위원회등 외부기관 대응 및 협력
 - 10. 기타 CP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, 설명 또는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중지, 개선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자율준수협의회 구성)

-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위원장으로 하며, 공정거래 관련 주요 부서의 부서장으로 구성한다.
- ② 자율준수협의회에는 간사를 두며, 간사는 CP 주관부서에서 선임한다.
- ③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한다.

	사규 (규정)	분류번호	C-G-008	Rev. 3	5/10
	정도경영 부문	제정일자	2023-06-01		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	개정일자	2026-05-13		

- ④ 간사는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운영을 총괄한다.

제 11 조 (자율준수협의회 운영 및 역할)

-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반기 1 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,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 1. CP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자문
 2. 부서간 공정거래 관련 업무 조정
 3. 자율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 및 관리
 4.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수행 지원 및 자문

제 12 조 (공정거래 실천리더 및 헬퍼의 선임과 역할)

- 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담당부서의 자율준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실천리더 및 헬퍼를 선임할 수 있다. 헬퍼는 실천리더를 보좌한다.
- ② 공정거래 실천리더 및 헬퍼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 1. 부서 내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
 2. 자율점검 활동 주관
 3. CP 관련 개선사항 발굴
 4. CP 주관부서와의 협업 및 정보 공유

제 13 조 (CP 주관부서의 역할)

- ①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여 CP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.
- ② CP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1. CP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
 2. 공정거래 관련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
 3. 공정거래 리스크 식별 및 분석
 4. CP 감사 및 모니터링 수행
 5. 내부제보 접수 및 조사 수행
 6.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정책, 동향 관리
 7. 자율준수편람 및 교육자료 작성, 배포
 8. CP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과제를 도출
 9. CP 등급평가 대응 및 관리
 10. 기타 CP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 3 장 CP 운영

제 14 조 (자율준수 의지선언)

- ①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를 선언하고, 이를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.

	사규 (규정)	분류번호	C-G-008	Rev. 3	6/10
	정도경영 부문	제정일자	2023-06-01		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	개정일자	2026-05-13		

- ② 자율준수 의지선언은 회사의 홈페이지, 사내 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파하여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 의지선언은 연 1 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 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.

제 15 조 (CP 의 운영)

- ① CP 주관부서는 연간 CP 운영계획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CP 주관부서는 CP 운영과 관련된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, 그 결과를 반기 1 회 이상 이사회(ESG 위원회)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CP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부서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16 조 (자율준수편람의 제작 · 활용)

-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편람은 문서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며,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편람은 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 · 개정하여야 하며, 법령 변경 등 필요 시 수시 개정할 수 있다.
- ④ 자율준수편람은 각 부서의 책임 하에 배포 · 관리되어야 한다.

제 17 조 (교육프로그램 운영)

-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이해 및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수립 · 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교육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
 1. 정기교육
 2. 특별(심화)교육
 3. 임원 및 직책자 대상 교육
 4.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대상 집중교육
- ③ CP 주관부서는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1. 교육 대상 및 과정
 2. 교육 일정 및 방법
 3. 교육 미이수자 관리 방안
 4. 교육 이해도 평가 및 만족도 조사 방법
- ④ 교육 실시 후에는 교육 대상자, 교육내용, 교육 결과 등이 포함된 교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- ⑤ 모든 임직원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, 교육 미이수자는 보충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⑥ 최고경영자 및 임원은 연 1 회 이상 공정거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
- ⑦ CP 주관부서는 교육 이수 여부를 관리하고, 필요 시 관련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.

	사규 (규정)	분류번호	C-G-008	Rev. 3	7/10
	정도경영 부문	제정일자	2023-06-01		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	개정일자	2026-05-13		

제 18 조 (사전업무협의 제도)

- 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전에 CP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업무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.
 1. 신규 계약 체결 또는 계약조건 변경
 2. 협력사 선정 및 거래조건 설정
 3. 약관 제정 및 변경
 4. 기타 공정거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
- ③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업무는 사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필요 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.

제 19 조 (위험성 평가)

CP 주관부서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평가하고, 적합한 방법으로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.

- ① 위험성 평가는 년 1 회 이상 실시하고, 등급은 상, 중, 하 3 단계로 구분한다.
- ②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, 리스크 등급이 '중' 등급 이상의 경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, 해당 리스크를 관리한다.
- ③ 법령의 재·개정, 사업구조 변경 등 주요 환경 변화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④ 위험성 평가 관련사항은 공정거래 관련 업무 위험성 식별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.

제 20 조 (현업부서의 공정거래 자율점검)

- ① 현업부서는 자율준수편람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.
- ②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반기 1 회 이상 담당부서의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CP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자율점검 결과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CP 주관부서에 상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공정거래 모니터링)

- ①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리스크가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수감부서는 CP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.
- ③ 모니터링 결과는 자율준수관리자 및 경영층에 보고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22 조 (내부제보 채널 운영 및 제보자 보호)

-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관하여 자율준수관리자, 현업부서에게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내부제보 채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 관련 내부제보 채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채널 운영에 대해 필요한

	사규 (규정)	분류번호	C-G-008	Rev. 3	8/10
	정도경영 부문	제정일자	2023-06-01		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	개정일자	2026-05-13		

조치를 유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신규 공정거래 리스크 발생 시 이를 대응하기 위한 신고/제보 채널의 신규 설치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.

- ③ 내부제보를 받거나 처리하는 직원은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④ CP 주관부서는 내부제보를 접수받을 경우 제 23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.
- ⑤ 회사는 사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한 해당 내부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, 신분보장, 책임감면 등을 통하여 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.
- ⑥ 내부제보자가 본인이 관련된 위법이나 부정을 제보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고, 모든 내부제보자는 내부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. 회사는 내부 제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를 요청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⑦ 임직원은 직무상 도는 우연히 내부제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내부제보자에게 이를 이유로 어떠한 형태로든 불이익을 가하거나 내부제보 사실을 누설,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⑧ 임직원이 전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내부제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.

제 23 조 (내부제보 조사담당자의 권한, 책임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와 관련된 내부제보가 내부제보채널에 접수될 경우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독립성, 중립성, 객관성, 익명성을 보장될 수 있는 적합한 인원을 내부제보 조사담당자로 선임하여 조사절차에 착수하도록 한다.
 1. CP 주관부서의 직원 중 CP 관련 경력 1 년 이상 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
 2. 사내 변호사 또는 CCP(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) 자격증 보유자로서 CP 관련 1 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
 3. 기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적격성 판단을 받은 자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제보 조사담당자가 해당 제보건을 타인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감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 및 제반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, 내부제보 조사로 인해 조사담당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내부제보 조사담당자는 조사 착수 후 적절한 시간내에 해당 내부제보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,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한 후 해당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내부제보 조사담당자는 조사 중은 물론이고 조사 이후에도 내부제보자의 신원 및 해당 내부제보사실을 보고라인에 있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일체 누설,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24 조 (내부제보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)

- ① CP 주관부서는 제 23 조의 내부제보 조사 및 규정 등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, 즉시 관련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전항의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해당 임직원에게 경고 및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으며, 해당 부서 직책자에게 적절한 시정 및 재발방지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.
- ③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직책자는 지체없이 대책 및 조치를 강구하고, 그 실시 보고서를 자율준수관리자

	사규 (규정)	분류번호	C-G-008	Rev. 3	9/10
	정도경영 부문	제정일자	2023-06-01		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	개정일자	2026-05-13		

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④ 제 1 항의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정도가 명백하고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,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.

제 4 장 CP 운영 효과성 평가 및 개선

제 25 조 (효과성 평가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운영하는 CP 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측정지표를 개발한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년 1 회 이상 CP 운영 성과에 대해 전항의 측정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전항의 평가 결과를 년 1 회 이상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.

제 26 조 (효과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)

- ① 최고경영자는 효과성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CP 운영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.
-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효과성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전항의 평가 결과를 년 1 회 이상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.
 1. 제도 및 규정의 개선
 2. 교육 프로그램의 보완 및 강화
 3.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
 4. 내부통제 및 점검체계 보완
 5. 기타 CP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
-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수립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,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개선조치 사항을 차년도 CP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5 장 기 타

제 27 조 (인센티브 및 포상)

-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운영에 기여한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.
 1. 공정거래 관련 내부제보를 통해 위반 행위 예방 또는 개선에 기여한 경우
 2. CP 교육 이수 및 활동 참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
 3. 공정거래 리스크 개선 및 예방 활동에 기여한 경우
 4. CP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경우
-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포상 기준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	사규 (규정)	분류번호	C-G-008	Rev. 3	10/10
	정도경영 부문	제정일자	2023-06-01		
	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	개정일자	2026-05-13		

제 28 조 (문서의 관리)

- ①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CP 운영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모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CP 관련 문서는 작성일 또는 종료일로부터 3 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관련 법령 또는 회사 규정에서 별도의 보관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.

제 29 조 (사내 다른 지침과의 관계)

- ① 본 지침은 공정거래 관련 사항에 대하여 회사 내 타 지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②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다른 지침에 따른다.

. 마침.

부 칙

- 이 지침은 2023. 6.1 부터 제정, 시행한다.
- 이 지침은 2024. 8.14 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이 지침은 2025. 1.17 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이 지침은 2026. 4.28 부로 개정, 시행한다.
- 이 지침은 2026. 5.13 부로 개정, 시행한다.